

제7조 정보요건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에게 그들의 신원, 영업소 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이에 관한 부정확, 불완전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제8조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1.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적 의사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유추할 수 있다.

제9조 형식요건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b) 그 사용된 수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i)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ii) 위 (a)호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

4.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a)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한 사람에게 현출될 수 있는 경우

5. 제4항 (a)호의 목적상,

(a) 무결성의 판단 기준은 의사표시, 저장 및 현출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 기재나 변경을 제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b) 요구되는 신뢰성의 표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상황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